

-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필기시험 합격자 : 768명 [붙임1]

※ 합격선 [붙임2] 참조

2 체력시험 계획

가. 기 간 : 2020. 8. 11.(화) ~ 8. 18.(화) * 세부일정 참조

※ 신분증, 응시표 및 필기구, 증명사진(3×4cm) 1매를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당일 07:4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장 소 : 안동체육관(등록 : 보조경기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05(운흥동 소재) ☎ 054-850-4650

다.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응시자는 코로나-19 관련, [붙임3]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여 체력시험 당일 제출

라. 체력시험 세부일정 : [붙임4] 참조

마.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참조

바. 측정방법 : [붙임6] 참조

※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의함

사. 도핑테스트 실시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2) 대 상 자 : 당일 체력시험 응시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한 선정

3)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7] 참조

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참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장은 시험전·후에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음의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자가 문진표(붙임 양식)를 제출하여야 입실 가능합니다.
 - 시험 당일 07:40부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한 후 시험장 입실 가능
 -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자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제출
 - 격리대상자 응시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격리대상자(자가격리자 포함) 등은 사전신고 시 별도 시험장 운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시험 응시 사전 신고】

- 대상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등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자 등 응시생은 원칙적으로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외출 허가 등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확진자는 불가)
- 자가 격리자 등 사전신고

① 사전 신고기간 : 2020. 8. 6.(목) 09:00 ~ 8. 10.(월) 12:00까지

② 접수처 :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부서(054 - 880 - 6152, 6155)로 유선 신고

※ 별도 시험장 안내는 2020. 8. 10.(월) 개별 유선 통보

※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 불가한 응시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가.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운동복, 운동화를 소지·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응시표, 필기구(흑색볼펜 등), 증명사진(3×4cm) 1매**를 지참하여 **07:40까지 시험장소(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도착·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관리관의 신분확인 요구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용품(코팅장갑, 탄마가루) 외 개인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스파이크 등 특수기능성 운동화, 손목·발목·허리보호대 등은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의 건강상태·질환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바.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5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다만,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임의로 일부 종목에 미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공고문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 미준수자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자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 불합격자(중도 포기자 포함)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도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로 간주

아. 시험당일 시험장(안동체육관)내에는 응시자 등 시험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시험장 맞은편 강변둔치주차장 이용

자. 응시자는 시험장 건물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화장실 등 시험장내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일자·장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체력시험 기구 사전공개

가. 일 시 : 2020. 8. 10.(월) 10:30 ~ 16:00 (12:00 ~ 13:00 제외)

나. 장 소 :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

다. 지 참 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라. 공개기구 : 5종목

- 약력, 배근력,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공개당일 종목별 기구는 1인 2회까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5 필기시험 성적 열람

가. 기 간

1)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20. 7. 10.(금) ~ 2021. 6. 30.(수)

2) 필기시험 합격자 : 2020. 10. 16.(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나. 열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

- 로그인 > 합격 / 성적조회

※ 성적열람은 위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불가합니다.

6**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등**

가. 일 자 : 2020. 8. 21.(금)

나. 방 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4-880-6152,6155)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gb119.go.kr>) 질의응답(Q&A)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1부.
3.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1부.
4. 체력시험 세부일정 1부.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1부.
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9.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10. 동의서 1부.
11. 시험장소(안동실내체육관) 위치도 1부.
12. 응시생 안내문 1부.
13.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1부.
14. 코로나19 예방수칙 1부. 끝.

[붙임1]

-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일반소방(남)(505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4100002	74100009	74100039	74100057
74100063	74100065	74100080	74100084
74100087	74100090	74100094	74100095
74100101	74100102	74100104	74100108
74100128	74100142	74100150	74100156
74100157	74100161	74100169	74100172
74100173	74100178	74100188	74100189
74100191	74100195	74100212	74100221
74100222	74100225	74100232	74100234
74100246	74100250	74100264	74100273
74100274	74100276	74100282	74100283
74100292	74100293	74100300	74100303
74100305	74100306	74100309	74100322
74100337	74100338	74100344	74100354
74100355	74100359	74100360	74100377
74100382	74100384	74100386	74100387
74100389	74100399	74100400	74100401
74100405	74100409	74100420	74100422
74100428	74100430	74100432	74100434
74100438	74100440	74100441	74100448
74100451	74100462	74100464	74100466
74100474	74100480	74100501	74100509
74100513	74100524	74100525	74100529
74100536	74100542	74100551	74100552
74100557	74100560	74100574	74100591
74100606	74100608	74100618	74100622
74100628	74100658	74100661	74100665
74100668	74100674	74100678	74100682
74100701	74100708	74100715	74100729
74100730	74100733	74100736	74100737

74100738	74100742	74100754	74100758
74100772	74100780	74100785	74100787
74100792	74100794	74100796	74100797
74100798	74100802	74100804	74100806
74100817	74100819	74100824	74100833
74100839	74100843	74100846	74100849
74100866	74100872	74100882	74100888
74100897	74100901	74100902	74100915
74100918	74100925	74100935	74100940
74100942	74100943	74100945	74100955
74100956	74100966	74100967	74100972
74100973	74100981	74100990	74100996
74100999	74101001	74101002	74101010
74101018	74101020	74101026	74101032
74101035	74101036	74101040	74101044
74101050	74101052	74101055	74101056
74101061	74101073	74101080	74101086
74101094	74101095	74101103	74101118
74101120	74101124	74101125	74101144
74101151	74101154	74101171	74101172
74101173	74101177	74101178	74101179
74101181	74101183	74101195	74101212
74101213	74101217	74101222	74101225
74101228	74101229	74101239	74101244
74101246	74101248	74101254	74101258
74101262	74101264	74101274	74101275
74101288	74101295	74101303	74101305
74101309	74101316	74101320	74101333
74101339	74101346	74101352	74101359
74101368	74101374	74101379	74101390
74101394	74101398	74101404	74101406
74101415	74101418	74101425	74101432
74101433	74101437	74101445	74101446
74101459	74101464	74101474	74101477
74101484	74101485	74101488	74101499
74101529	74101538	74101540	74101551

74101552	74101554	74101555	74101559
74101560	74101572	74101577	74101580
74101581	74101594	74101597	74101598
74101599	74101605	74101607	74101608
74101615	74101621	74101632	74101654
74101659	74101662	74101668	74101669
74101671	74101672	74101677	74101681
74101695	74101697	74101699	74101703
74101708	74101714	74101718	74101722
74101738	74101745	74101758	74101760
74101764	74101765	74101775	74101778
74101783	74101785	74101789	74101790
74101809	74101813	74101821	74101824
74101825	74101844	74101846	74101849
74101852	74101856	74101858	74101862
74101864	74101866	74101869	74101870
74101873	74101881	74101889	74101897
74101898	74101900	74101901	74101912
74101925	74101927	74101928	74101937
74101960	74101961	74101974	74101977
74101978	74101981	74101983	74101996
74102006	74102010	74102018	74102019
74102023	74102024	74102026	74102030
74102031	74102037	74102038	74102049
74102055	74102064	74102068	74102070
74102073	74102076	74102083	74102084
74102089	74102095	74102096	74102102
74102112	74102122	74102124	74102147
74102153	74102155	74102188	74102192
74102197	74102198	74102206	74102215
74102220	74102229	74102231	74102239
74102254	74102260	74102277	74102289
74102290	74102292	74102296	74102318
74102320	74102321	74102324	74102357
74102358	74102362	74102375	74102377

74102380	74102381	74102390	74102402
74102404	74102406	74102411	74102415
74102427	74102434	74102441	74102446
74102454	74102461	74102465	74102471
74102478	74102482	74102491	74102492
74102500	74102501	74102502	74102505
74102508	74102520	74102527	74102529
74102536	74102540	74102549	74102553
74102556	74102589	74102591	74102595
74102600	74102612	74102630	74102641
74102650	74102654	74102655	74102657
74102663	74102665	74102667	74102676
74102677	74102680	74102683	74102686
74102701	74102713	74102714	74102723
74102730	74102737	74102740	74102744
74102745	74102763	74102764	74102766
74102770	74102774	74102779	74102781
74102789	74102797	74102800	74102801
74102804	74102805	74102814	74102819
74102825	74102829	74102834	74102841
74102850	74102852	74102858	74102859
74102863	74102867	74102871	74102874
74102878	74102881	74102890	74102895
74102905	74102908	74102911	74102927
74102930	74102937	74102956	74102962
74102980			

▣ 일반소방(여)(3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4200013	74200026	74200034	74200045
74200046	74200065	74200092	74200124
74200163	74200171	74200185	74200254
74200261	74200279	74200280	74200290
74200299	74200300	74200318	74200321
74200330	74200345	74200349	74200356
74200372	74200377	74200384	74200389
74200398	74200424		

▣ 구조(남)(41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100015	79100028	79100031	79100034
79100036	79100038	79100040	79100044
79100047	79100050	79100054	79100055
79100057	79100059	79100060	79100068
79100071	79100073	79100074	79100076
79100079	79100084	79100092	79100093
79100094	79100098	79100100	79100103
79100105	79100109	79100112	79100120
79100123	79100125	79100133	79100136
79100146	79100150	79100151	79100157
79100158			

▣ 구급(남)(98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200002	79200006	79200014	79200016
79200017	79200020	79200026	79200033
79200034	79200040	79200044	79200045
79200049	79200051	79200059	79200062
79200064	79200074	79200080	79200084
79200091	79200092	79200102	79200107
79200110	79200111	79200117	79200127
79200141	79200142	79200144	79200151
79200154	79200157	79200159	79200167
79200171	79200173	79200183	79200185
79200196	79200200	79200204	79200207
79200215	79200216	79200221	79200222
79200231	79200236	79200238	79200240
79200250	79200251	79200256	79200259
79200260	79200274	79200282	79200283
79200284	79200288	79200296	79200303
79200307	79200309	79200315	79200319
79200321	79200329	79200344	79200347
79200348	79200351	79200361	79200364
79200365	79200371	79200373	79200374
79200377	79200380	79200381	79200383
79200394	79200396	79200398	79200400
79200403	79200415	79200418	79200423
79200428	79200430	79200435	79200436
79200440	79200450		

■ 구급(여)(6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210019	79210023	79210025	79210030
79210036	79210039	79210040	79210046
79210084	79210104	79210127	79210129
79210132	79210133	79210146	79210156
79210169	79210175	79210180	79210194
79210197	79210199	79210231	79210246
79210263	79210267	79210270	79210274
79210305	79210313	79210343	79210359
79210379	79210381	79210386	79210389
79210393	79210407	79210413	79210420
79210423	79210424	79210425	79210430
79210461	79210469	79210470	79210473
79210476	79210481	79210485	79210491
79210495	79210515	79210523	79210527
79210569	79210570	79210579	79210581

■ 차량정비(남)(4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300002	79300010	79300011	79300023

■ 운전(남)(3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400009	79400018	79400027

■ 정보통신(1명)

응시번호
79500005

▣ 의무소방전역(남)(6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700010	79700020	79700038	79700050
79700056	79700057		

▣ 소방관련학과(남)(16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800009	79800013	79800021	79800026
79800034	79800045	79800059	79800101
79800115	79800123	79800128	79800176
79800205	79800211	79800223	79800242

▣ 소방관련학과(여)(4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810027	79810047	79810055	79810065

[붙임2]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현황(합격선)

채용 방법	분 야		채용 계급	선발 인원	원 서 접수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선 최 저	비고
총 계		12개 분야		484	5,088	3,631	768		
소 계				352	3,415	2,778	535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남자	소방사	337	2,989	2,468	505	74.38	371.89
		여자		15	426	310	30	83.19	415.93
소 계				132	1,673	853	233		
경력 경쟁 채용	구 급	남자	소방사	60	452	273	98	71.67	
		여자		30	582	310	60	88.33	
	구 조	남자		20	165	92	41	63.33	
	차량정비	남자		2	24	12	4	66.67	
	운 전	남자		3	30	13	3	66.67	
	정보통신	양성		2	6	3	1	78.33	
	건 축	양성		2	18	1	0	-	
	의무소방	남자		3	59	22	6	76.67	
	소 방 전공학과	남자		8	266	109	16	88.33	
		여자		2	71	18	4	88.33	

※ **합격선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50명 이상은 1.5배수, 50명 미만은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붙임4]

-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
체 력 시 험 세 부 일 정

시험일	채용분야	인 원		대 상 자	비고
8. 11.(화)	소방(남)	120명		74100002 ~ 74100737	
8. 12.(수)	소방(남)	130명		74100738 ~ 74101437	
8. 13.(목)	소방(남)	130명		74101445 ~ 74102192	
8. 14.(금)	소방(남)	125명		74102197 ~ 74102980	
8. 17.(월)	소방(여)	134명	30	74200013 ~ 74200424	
	구급(남)		98	79200002 ~ 79200450	
	의무소방전역		6	79700010 ~ 79700057	
8. 18.(화)	구조(남)	129명	41	79100015 ~ 79100158	
	구급(여)		60	79210019 ~ 79210581	
	차량정비		4	79300002 ~ 79300023	
	운 전		3	79400009 ~ 79400027	
	정보통신		1	79500005	
	소방전공학과(남)		16	79800009 ~ 79800242	
	소방전공학과(여)		4	79810027 ~ 79810065	

[붙임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여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여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중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7)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 통에 90ml 이상이 되도록 수집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상북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 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B시료분석 요청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합격)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양성)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붙임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붙임8)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붙임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섞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9]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전자 우

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안동시 실내체육관 위치도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05(운흥동 소재) (☎ 054-850-4650)

○ 교통편

- 시내버스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에서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택 시

- 안동역에서 10분 이내 도착
- 안동터미널에서 20분 이내 도착

응시자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은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환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기준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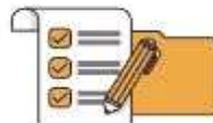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